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2007. 9. 1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와의 혼동방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상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변경

나.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교육 관련사항 추가 (안 제5조제1항)

다. 자문단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안 제7조제6항)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당해 → 해당, 내지 → 부터, 1인 → 1명, 내에 → 안에 등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나.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알림 (2007.10.26 시 자치행정과 13447호)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7. 10. 25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뀔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면서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7. 9. 1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의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임.

□ 주민자치회 기능확대는

2007. 12. 26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 밖에, 법령용어의 정비는

조례상에 표기된 각종 용어 중에서 어렵거나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보편화된 용어로 바꾸려
 는
 것으로 이는 2006년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
 기
 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 정비는 앞으로 다른 조례 제·개정시에도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사안임.

□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가결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008. 3. 2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
 - 차.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6 (생략)